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994. 12.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감사의 목적

시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2. 감사기간

1994년 11월 30일 ~ 12월 6일(7일간)

3. 감사실시 기관

본 청	사 업 소	비 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수도과, 민방위과	보건소, 문화회관 관리사업소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위원회명칭	위원장	위원	보조직원
서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이 재 병	간사 : 최은우 위원 : 윤찬구 위원 : 정진국 위원 : 조계창	의사계장 이회집 행정 7급 정동남 행정 9급 김영환 기능10등급 국현석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시	실시기관	장소	감사방법	비고
'94. 11. 30 ~ 12. 2	시본청	시청회의실	질의.답변	
'94. 12. 3	문화회관	문화회관	〃	
'94. 12. 5	시보건소	보건소회의실	〃	
'94. 12. 6	시본청	시청회의실	〃	

5. 주요감사내용

실과명	주요내용	비고
기획감사실	1. POOL 예산 집행을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 집중 배정하여 집행한 이유 2. 명시이월사업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이월시킨 이유 3. 읍내동 택지개발사업지구 공사비중 토지개발 공사부담금 367,125천원이 납입 지연된 이유	

실 과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문 화 공 보 실	1. 기반행정 종사자에게 배부되는 계도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증설된 통.반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하지 못한 사유와 구독자가 서울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을 요구할시 보급할 계획 2. 난시청 지역의 TV 수신료를 받는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총 무 과	1. 통합시 잉여인력 해소책 2. 공무원의 해외연수대상국이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인바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지역으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내무부와 도주관보다 자체적인 연수실적이 저조한 이유 3. 행정동우회에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는 이유 4. 공무원의 자질 향상 대책 5.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문제점의 해소 대책 6. 각종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정산서를 받지 않는 이유	
사 회 진 흥 과	1. 우수지도자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 2. 불법광고물을 철거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3. 잠홍동에 소재해 있는 공설운동장의 관리가 미흡한 이유 4. 온석동 가로 화단조성및 조경공사 계약시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무엇이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견적을 받았어야 할터인데 견적서 없이 계약한 사유와 의원들의 사업현장시찰시 자료에는 63,200천원이라고 했는데 3,800천원의 차이가 있는 이유	
세 무 과	감사실시 생략 → 내무부주관 시.군교체 감사(1개월간)로 생략함.	

실 과 명	주 요 내 용	비 고
회 계 과	1. 삼성 APT 취득시 의회의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이유와 당초 평가액 17억원의 재산이 현재 16억2천만원으로 하락되였고 앞으로도 재산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 2. 운전기사가 있는데도 예산서상에도 계상되지 않은 자가 운전수당을 6개월간 1,800천원을 지급한 사유 3. 양대동 쓰레기매립장인 시유재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채권설정(가압류)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사유와 현재 480,000만원에 조흥은행 서산지점에 압류된 사유 4. 서산소방서 재산이 공부상 시장이 소유권자이므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무상으로 대여한 이유	
시 민 과	1. 민원처리(복합, 유기한)의 기간내 처리여부 2. 무적자 사실 확인원 발급 상황	
지 적 과	1. 삼성 APT 건축과 관련하여 당초 20억원이 기부채납이 아니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어야 타당한데 부과하지 않은 이유 2.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동문동과 오산동 지역외에 더 없는지	
사 회 과	1. 의료 대불금 미납부자에 대한 대책 2. 터미널 부근의 불법 포장마차가 10년이 넘도록 철거를 하지 못하는 사유와 근절대책 3. 단군성전 위의 무훈탑의 허가 만료기간이 금년 말인데 그에 대한 대책 4. 시 상조은행 성금 기탁자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유도하여 성금을 모금한 사유	
환 경 보 호 과	1. 대기오염 방지 대책 2. 재활용 센타의 운영 실태가 미흡한 이유	

실 과 명	주 요 내 용	비 고
	3. 쓰레기량 감량을 위한 소각로를 설치하고도 사용을 하지 않은 이유	
가정복지과	1. 충효교실의 운영이 개강식도 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된 이유 2. 정려각 복원에 따른 설계와 사업추진 결과가 다른데 문제점과 미비점이 무엇인지	
산 업 과	1. 금년도 추곡수매량에 대한 대책 2. 화훼재배농가의 소득이 기대이하의 작황으로 타산성이 하락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대책 3. 시내의 곳곳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설치하지 못하는 사유 4. 고용촉진 대상자 선정의 적정여부 5. 농어민후계자의 직판장 운영 실태 6. 수석농공단지의 배수로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민원에 대한 조치 7. 수석농공단지에서도 폐차장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8. 농어촌발전특별회계에서의 지원금과 화훼단지 조성 지원금을 동일인에게 중복으로 지원해준 이유와 대상자가 오산동에 집중 지원된 이유 9. 동부시장내의 화재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 10. 석림동의 L. P. G 가스 충전소의 이전 계획 11. 수석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기채한 금액을 저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하지 못한 사유 12. 각종 민원의 처리 결과	
건 설 과	1. 도로부당 이득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3건이 패소했는데, 패소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한 이유 2. 터미널 부근의 포장마차를 노상 적치물 차원에서 단속을 했어야 하는데 못한 이유	

실 과 명	주 요 내 용	비 고
	3.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측량수수료 450만원과 감정료 540만원은 예산에 계상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	
도 시 과	1. 부실건물 현황 및 대책 2.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늦어지는 사유 3.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환지청산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유 4. 국.공유지내의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를 시키지 못하고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유 5. 국.공유지내에 있는 폐건물이 있는데도 철거하지 않는 이유	
수 도 과	1. 누수신고를 받고도 방치한 이유 2. 시민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있는데 수도물의 개선방안 3.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94년도에 부담할 2,680,000천원을 이월시켰는데 이는 전액 한전융자금인바 이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4.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예산액의 10%) 5. 수도물 공급 확대 계획 6. '94년도 발주사업중 예산액의 95%이상으로 낙찰되어 사업 시행을 했는데 낙찰율이 높은 이유	
민 방 위 과	1. 주민신고 모의 훈련의 효과 2.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지	
보 건 소	1. 하계방역의 적정실시 여부와 효과 2. 향정신성 의약 관리외에 일반 마약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한데 그 이유	
문 화 회 관	1. 문화회관 광장 사용료가 저렴하므로 상향조정할 계획 2. 예술단을 초청했다고 하여보상금외에 다과 및 간식비로	

실 과 명	주 요 내 용	비 고
	2,415천원을 지출한 근거 3.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진 사단법인 한얼문화예술진흥회 우리 농산물애용 연예인 봉사단에 광장을 사용토록 허가한 사유	

6. 시정요구사항

1) 토지개발공사와 같은 대규모인 회사가 회사측의 사유로 인하여 367,125천원의 부담금을 체납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공설운동장의 관리가 미흡한 것은 관리책임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기설치된 시설물을 사용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삼성 A.P.T의 취득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음을 잘못된바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부된 재산을 재감정하시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된 재산의 감정가와 개발부담금과의 차액이 있을시 차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부과.징수하기 바람.

4) 쓰레기 감량을 위해 설치된 소형 소각로가 사용방법의 무지, 또는 인근주민의 사용실적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기설치된 소각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5) 정례각의 복원공사가 일부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의 조치하시기 바람.

6) 국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 4,500천원과 국유재산관리 감정료 5,400천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경예산 편성시 정리하지 않고 사장시킨 것은 부당함.

7)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책임진 시장이 국공유지내의 무허가건축물을 철거시키지 않고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함.

8) 수석농공단지의 배수로가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이 되어 사유지를 허락없이 침해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요함.

9) 각종 보조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을 검토하여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한후 보조 단체로부터 당해사업이 종료 되면 정산서를 받아 보조금 집행이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지도 하여야 함에도 정산이 전혀 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시정을 요함.

7. 건 의 사 항

1) POOL 집행중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등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에서 당면업무추진을 이유로 3개 실과에서 집중지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가 되는바 개선할 것을 건의함.

2) 주민홍보 계도지를 서울신문으로 한정시키지 말고 수혜자가 요구하는 신문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을 요함.

3) 난시청 지역에서도 TV 수신료를 받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상부에 건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함.

4) 터미널 부근의 포장마차로 인하여 동문 61통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도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바, 담당부서를 확실히 규정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함.

5) 시민이 누수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신고 하였음에도 건물이나 토지주의 사용허가의 어려움으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할 것을 건의함.

6) 하계 연막소독은 후진국형 소독방법이라고 사료되므로 자체 실정에 맞는 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 함.

7)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높은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도록 한것에 대하여 격려를 드림. 그러나 초청공연시마다 지출할만한 법적인 근거도 없이 다과비 또는 간식비로 2,415천원을 지출한 것은 부당하므로 개선을 건의함.

8) 문화회관 광장 사용을 허가했을 경우 각종쓰레기 수거료가 사용료 징수금이상으로 소요되는바 광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개선할 것을 요구 함.

8. 수 범 사 례

부시장을 단장으로 총 8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시정연구 기획단은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토론회를 개최 하여 60여건에 달하는 연구성과를 이룩함은 물론,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또한 연구된 방안들이 통합 서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 할수 있을 것으로 보아 매우 바람직한 사례라고 사료됨.